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4(수) 10:00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09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23. 3. 21.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에 의거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교섭단체의 정의(안 제2조)
 -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함.
-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음.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교섭단체의 지원(안 제5조)

-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원근거 마련

□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 추가

-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가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교섭단체 대표 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되어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2024. 4. 1. 기준 전국 87개(서울 17개 포함)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 등을 규정하여 운영중임.

- 우리구 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서울시 자치구의의회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서울시 자치구의의회 현황

-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 서울시 포함 17개

〈2024. 4. 1 기준〉

연번	지자체	구 분	제 명	구성요건	제정일자
1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0명 이상	2015. 1. 2.
2	노 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5명 이상	2022. 1. 6.
3	강 동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3명 이상	2022. 9. 7.
4	양 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3명 이상	2023. 4. 20.
5	광 진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7. 28.
6	서대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10. 5.
7	관 악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명 이상	2023. 11. 6. (2024. 7. 1. 시행)
8	강 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11. 15. (2024. 1. 1. 시행)
9	영등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12. 28.
10	성 동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4. 1. 3.
11	중 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4. 3. 27.
12	강 남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5명 이상	2023. 9. 27.
13	구 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11. 9.
14	용 산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11. 10.
15	은 평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3명 이상	2024. 1. 4.
16	동 작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4. 1. 4.
17	중 량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3명 이상	2023. 10.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63조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